

제2674호
2019. 8. 9.

발행인: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서 양 호
편집인: 홍 보 전 산 과 장 김 창 수
전화: 3396-4955
(<http://www.junggu.seoul.kr>)

선	기 관 의 장
람	

구 보

● 조 려

제1459호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	2
제1460호 :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3
제1461호 :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6
제1462호 :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9
제1463호 :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1
제1464호 :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14
제1465호 :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21
제1466호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23
제1467호 :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38

● 공 고

제2019-595호 : 2019. 6. 1. 기준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41
제2019-605호 : 건축물부존재증명서 직권처리 공시송달 공고	42

※ 구보게재를 의뢰한 각 부서에 알려드립니다.

구보의 게재내용은 중구청 홈페이지<<http://www.junggu.seoul.kr>(행정정보→구보/입법예고) 클
릭>에 게재되고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게재의뢰 TEL.(02)3396-4955 / FAX.(02)3396-9022/3

● 구보는 매주 수요일 발행이며, 발행일 3일 전까지 접수되어야 합니다.

※ 구보 게재일자가 문서 시행일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구보는 공문서의 효력을 가지며, 구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합니다.

공람											

조 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8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59호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 폐지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는 폐지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폐지이유

- 지방공무원법 제2조제4항에서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조건, 임용절차, 근무상한연령,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 또는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하고 있고,
- 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대통령령, 2013.12.11.제정)」이 시행됨에 따라 실효성이 없어 해당 조례를 폐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중구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관리 조례」폐지 (제정일 : 1988. 5. 1. 조례 제31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8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60호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중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5조의3(공유주차구획 운영) ① 구청장은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시행하는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이하 “공유주차구획”이라 한다)하여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주차공간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 1의 비고란의 제4호에 “50%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를 “5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으며, 1급지 공영 노외 주차장 단체계약(50대 이상) 체결 시에는 60% 범위에서 조정할 수 있다.”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신 설>	제5조의3(공유주차구획 운영)① 구청장은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시행하는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하여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이하“공유주차구획”이라 한다)하여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 공유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② 그 밖에 주차공간 공유사업에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별표1】 - 비 고- 1 ~ 3. (생략) 4. 구청장은 인근 주차장과 의 형평을 유지하거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50%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별표1】 - 비 고- 1 ~ 3. (현행과 같음) 4. ----- ----- ----- 있으며, 1급 지 공영노외주차장 단체계약(50대 이상) 체결시에는 6 0%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공유 촉진을 통해 자원의 활용을 극대화하고 공동체를 회복하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거주자우선주차장 공유사업을 실시하여 주차난 해소에 기여하고자 함.
- 1급지 공영노외주차장 월정기 이용자의 활용도가 현저하게 저하되어 주차장의 공실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단체계약(50대 이상)에 한하여 주차요금을 60% 범위 안에서 조정할 수 있도록 법적근거를 마련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 수익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공유주차구획의 운영(제5조의3)
 - 거주자우선 주차제를 시행하는 전용주차구획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주차장을 이용하지 않는 시간대에 여러 사람이 주차구획을 공유하여 이용할 수 있는 주차공간 공유사업 시행
- 공영주차장의 요금(별표 1)
 - 인근 주차장과 형평을 유지하거나 지역여건 등을 감안하여 주차장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 단체계약(50대이상) 체결시에는 주차요금을 지역실정에 따라 60% 범위 안에서 조정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8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61호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한다.

제1조 제목 외의 부분 및 제2조제1항 중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한다.

제3조 각 호 외의 부분을 다음과 같이 한다.

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 · 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 · 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 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제4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수탁기관의 명칭·주소,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4조제3항 중 “2년”을 “3년”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치매관리법」,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등을 준용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치매관리법」제3조 및 제17조에 따라 치매관리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를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목적) ----- -----치매안심센터----- -----.
제2조(명칭 및 위치) ①명칭은 “서울특별시 중구 치매지원센터” (이하 ‘센터’라 한다)로 한다. ② (생략)	제2조(명칭 및 위치) ①----- 치매안심센터” ----- ② (현행과 같음)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 정신건강 증진에 관한 업무 2. 치매상담, 교육, 홍보, 정보제공 등에 관한 업무 3. 치매 조기검진에 관한 업무 4. 치매환자의 발견·등록관리에 관한 업무 5. 치매관련 재활프로그램 운영에 관한 업무 6. 치매환자·가족에 대한 교육 및 지원사업 7. 보건복지인력에 대한 치매교육 및 자문에 관한 업무 8. 치매관련 지역사회 자원인프라 강화에 관한 업무 9.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그 밖에 노인보건에 관한 업무	제3조(업무) 센터는 다음 각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치매 관련 상담 및 조기검진 2. 치매환자의 등록·관리 3. 치매등록통계사업의 지원 4. 치매의 예방·교육 및 홍보 5. 치매환자를 위한 단기쉼터의 운영 6. 치매환자의 가족지원사업 7. 그 밖에 구청장이 치매관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현행	개정안
제4조(운영의 위탁) ① (생략)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위탁기간은 협약일로부터 2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보건법」,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등을 준용한다.	제4조(운영의 위탁)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하고자 하는 때에는 <u>수탁기관의 명칭 · 주소</u>, 위탁업무, 위탁기간, 위탁조건 관리책임, <u>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u>, 그 밖에 운영상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③----- 3년 ----- 제10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u>치매관리법</u>」,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구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재무회계 규칙」등을 준용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치매관리법」개정 및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치매관련 서비스 센터의 명칭 변경 및 누락·보완사항 등을 정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치매관리법에 의거 종전의 “치매지원센터”를 “치매안심센터”로 변경함. (제명, 제1조, 제2조제1항)
- 치매관리법에 의거 센터업무에 대한 내용 현행화(제3조)
-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거 협약체결 사항에 “수탁기관의 명칭 · 주소,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추가(제4조제2항) 및 협약기간을 “2년 이내”에서 “3년 이내”로 개정(제4조 제3항)
- 준용 근거법령을 “지역보건법”에서 “치매관리법”으로 변경, “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추가(제10조)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8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62호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 9조에 따라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다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 환경 수준 향상 및 이용편의 증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제12조(개방화장실의 지정) ① 구청장은 법 제9조에 따라 화장실 중 다수인이 항상 이용할 수 있는 장소와 시설의 화장실에 대하여 개방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다. <u>다만,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시행령 제3조제2항 각 호에 따른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화장실 이용 환경 수준 향상 및 이용편의 증진 등을 고려하여 지정할 수 있다.</u>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 제1항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방화장실의 지정 시 시설물의 규모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개정되어 이를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2조(개방화장실 지정) 후단 신설
 - 일정 규모 미만의 건축물을 소유하거나 관리하는 자가 개방화장실로 지정을 요청할 경우 화장실 이용 환경 수준 향상 및 이용편의 증진 등을 고려하여 지정 가능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8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63호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위탁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전에 결정된 시설의 위탁 계약은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본다.

[별표]

서울특별시 중구 구립 사회복지시설(제3조 관련)

주관부서	시 설 명	위 치	주 요 기 능
복지지원과	신당종합사회복지관	동호로11길 22(신당동)	1. 사례관리
	유락종합사회복지관	퇴계로 460(신당동)	2. 서비스제공
	중림종합사회복지관	서소문로6길 16(중림동)	3. 지역조직화
사회복지과	약수노인종합복지관	다산로6길 11(신당동)	1. 노인의 교양·취미생활 및 사회참여활동 등 서비스 제공 2. 건강증진 및 질병예방 서비스 제공 3. 그 밖에 노인복지 증진에 필요한 서비스 제공
	구립중구노인요양센터 남산실버복지센터 신당데이케어센터	필동로 96 (장충동2가) 동호로5길 189 (신당동) 다산로25길 6 (신당동)	1. 차매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구립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 (추가)	서소문로6길 16(중림동), 4층	1. 차매 등 노인성질환을 가진 어르신 요양보호
	중구장애인복지관	퇴계로 460 (신당동) 중구종합복지센터 2,4,5층	1. 장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상담·재활·재가복지 등 종합적인 서비스
	구립중림장애인주간보호센터(추가)	서소문로6길 16(중림동), 별관2층	1. 발달장애인 및 그 가족들에 대한 상담·재활·재가복지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우리구 사회복지시설 신규 설치에 따라 이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서울특별시 중구 사회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별표3】서울특별시 중구 구립사회복지시설 (제3조 관련) 중 ‘구립중림어르신데이케어센터’ 및 ‘구립중림장애인주간보호센터’ 추가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등 일괄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8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64호

장애인등급제 폐지 관련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등 일괄개정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관련 내용에 대한 포괄적 정비를 위해 서울특별시 중구 자치법규를 일괄 개정함으로써, 법적 안정성과 원활한 제도 시행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중 제1급 또는 제2급 제3급 장애인중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단, 지체장애 제3급일 경우 상지 장애인은 제외한다.”를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으로 한다.

제3조(「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로서 계약자가직접”을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계약자가 직접”으로 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및 별표를 별지와 같이 한다.

제4조(「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

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중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장애등급이 1·2급인 사람”을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한다.

제5조(「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장애등급 3급 이상”을 “심한 장애”로 한다.

제6조(「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장애등급 3급 이상”을 “심한 장애”로 한다.

제7조(「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장애등급”을 “장애 정도”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 신문·복권판매대 ☐ 매점(10㎡이하) ☐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위탁계약) 신청서						
신 청 인	성 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주 소				세대원수 (신청인 포함)	
	신청구분 (해당란에√표시)	☐ 장애인 ☐ 한부모가족 ☐ 노인 ☐ 북한이탈주민 ☐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장애정도 (장애인인경우)	
	수 급 자 대상여부 (해당란에√표시)	☐ 수급(생계급여, 의료급여) ☐ 수급자가 아님		세대원중 장 애 인 유무여부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 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 계약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신문·복권판매대 ☐매점(10㎡이하)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위탁계약)를(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귀하						
접수번호	제 호					
위 신청서를 접수하였음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서울특별시 중 구 청 장 (인)						
첨부서류 : 국가유공자 수첩 등(기타 우선계약자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는 당해기관에서 확인)						

〔별표〕

신문 판매대 등 설치허가 또는 위탁계약 신청자가 2인 이상일 때의 우선순위

순위	장 애 인	노인	한부모가족	국가유공자 등, 독립유공자 등, 북한이탈주민
1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2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수급자, 의료급여수급자를 제외한 자

※ 신청자의 우선순위가 같을 경우

1. 재산 및 월 평균소득이 적은 자
2. 세대원 중 장애인이 있는 자
3. 세대원수가 많은 자
4. 연장자 순으로 우선순위를 결정

산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이용대상) 장애인 콜승합차를 이용할 수 있는 사람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장애등급 중 제1급 또는 제2급 제3급 장애인 중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단, 지체장애 제3급일 경우 상지 장애인은 제외한다. 2. (생략)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제5조(이용대상) -----. 1.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서울특별시 중구에 거주하는 자로서 버스 등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2.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제5조에 따라 계약을 체결한 자는 신문판매대등을 직접 관리하여야 하나 <u>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 관련 별표1의 장애등급 2급 이상인 자로서 계약자가 직접 운영을 대리할 수 있으며, 이 경우에는 사전에 당해 기관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다른 사람에게 전매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u> ② (생략)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제6조(사업자의 의무) ① ----- <u>「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 계약자가 직접</u>----- -----. ②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 제2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의한 지원대상은 각 호와 같다. 1. 2. (생략) 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의료급여 수급자로서 「<u>장애인복지법</u>」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u>장애등급이 1·2급인 사람</u> 4. (생략)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 제2조(지원대상) -----. 1. 2. (현행과 같음) 3. ----- ----- 「<u>장애인복지법</u>」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4. (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행	개정안
제12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②(생략) ③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11조제2항에서 정한 사용료의 100분의 50 범위에 서 감면할 수 있다. 1.(생략)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u>장애등급 3급 이상</u>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3.~5.(생략) ④·⑤(생략)	제12조(사용료의 면제 및 감면) ①·②(현행과 같음) ③ ----- -----. 1.(현행과 같음) 2.----- -- <u>심한 장애</u>----- ----- -- 3.~5.(현행과 같음) ④·⑤(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수강료의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6조제3항에서 정한 수강료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감면할 수 있다. 1.(생략) 2.「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과 <u>장애등급 3급 이상</u>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동반하는 보호자 1명 3.~5.(생략)	「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8조(수강료의 감면) ----- ----- ----- -----. 1.(현행과 같음) 2. ----- -- <u>심한 장애</u>----- ----- 3.~5.(현행과 같음)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6조(지원내용) ① 구청장은 재직 중인 장애인공무원이 원활한 직무수행을 위한 지원을 요청한 경우 장애유형, 장애등급, 업무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지원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생략)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제6조(지원내용)① ----- ----- ----- ----- <u>장애 정도</u>----- ----- -----. ②(현행과 같음)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2019.7.1.자로 장애등급제가 폐지됨에 따라 장애등급(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1~6급)이 명시된 우리 구 조례를 일괄 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개정대상
 - 1)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 콜승합차 운영 및 관리 조례
 - 2) 서울특별시 중구 공공용의 청사내의 신문·복권 판매대 매점 및 식음료용 자동판매기 설치계약에 관한 조례
 - 3) 서울특별시 중구 저소득 주민 유료방송 시청료 지원 조례
 - 4) 서울특별시 중구 문화·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5) 서울특별시 중구 손기정기념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6) 서울특별시 중구 장애인공무원 편의지원 조례
- 개정내용

현 행
- 장애등급 - 장애 1~3급 - 장애 4~6급 - 장애 1~6급

⇒

개 정
- 장애정도 - 심한장애 - 심하지 않은 장애 - 등록 장애인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8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65호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

서울특별시 중구 통·반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제5항 중 “구청장은”을 “동장은”으로 한다.

제10조제2항 및 제3항 중 “구청장”을 각각 “구청장 또는 동장”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산구조문 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의 명칭과 구역은 구청장이 정하고, 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3조(통·반의 명칭 및 구역) 통·반의 명칭과 구역은 동장이 정한다. 통·반을 개폐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 ④ (생략)	제5조(통장 및 반장의 위·해촉)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신분증을 발급할 수 있으며, 신분증의 규격 등 발급에 관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⑤ 동장은 ----- -----.
제10조(편의제공) ① (생략)	제10조(편의제공) ① (현행과 같음)
② 구청장은 통·반장에게 직무수행 능력 증진을 위한 교육훈련과 사기를 북돋기 위한 사업을 실시할 수 있으며, 이에 소요되는 재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구청장 또는 동장 ----- ----- -----.
③ 구청장은 통장이 임무수행 중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보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③ 구청장 또는 동장 ----- -----.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구청장이 임명·관리 하던 통장의 위·해촉 등 통·반장 관리의 전 사무를 동장에게 위임하여 동에서 자체적으로 통·반 관리를 하게 함으로써 현실성 있는 통·반 관리 업무를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통의 명칭과 구역의 지정을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개정(제3조)
- 통·반장의 신분증 발급을 구청장에서 동장으로 개정(제5조제5항)
- 통·반장의 교육훈련과 사기를 북돋기 위한 사업실시의 추진을 구청장에서 구청장 또는 동장으로 개정(제10조제2항)
- 통장 상해보험 가입을 구청장에서 구청장 또는 동장으로 개정(제10조제3항)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8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66호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이하 “박물관”이라 한다.)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함으로써, 박물관의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여 서소문 역사 공원의 문화적 가치와 정체성을 살려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조성하여 중구를 관광 문화의 도시로 알리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시물”이란 이 박물관에서 일반인이 관람할 수 있도록 상설 또는 일정기간 동안 전시하는 작품, 유물 등의 자료를 말한다.
2. “유물”이란 보존·전시·연구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 수집 또는 보관 등에 의하여 박물관에서 관리하는 모든 자료를 말한다.
3. “수집”이란 유물을 구입, 기증, 대여 등의 방법으로 박물관이 소장하는 것을 말한다.
4. “사용료”란 박물관 내 대관시설 이용 시 대가로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5. “수강료”란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각종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대가로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
6. “관람료”란 전시관에 있는 전시물을 관람하기 위해 지불하는 요금을 말한다.

제3조(설치 및 기능) ① 이 조례에 따라 설치 및 운영하는 박물관의 명칭, 위치, 기능은 다음과 같다.

1. 명 칭 :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2. 위 치 : 서울특별시 중구 칠패로 5
 3. 기 능 : 서소문 역사 공원의 문화적 가치와 역사를 반영한 전시, 다양한 교육·문화 프로그램 등을 운영하여 중구를 세계적인 관광 명소로 알리고자 함
- ② 박물관 내 설치되는 시설은 다음과 같다.
1. 문화 시설 : 상설 전시관, 기획 전시관, 기념 전당, 하늘 광장, 도서관, 강당 등
 2. 편의 시설 : 카페테리아, 기념품 숍, 부설 주차장

제2장 시설의 운영 및 관리

제4조(운영) ① 박물관 운영은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이 한다. 다만, 박물관의 효율적인 관리와 이용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구청장은 박물관을 비영리법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박물관 위탁에 필요한 절차, 방법 등은「서울특별시 중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및「공유 재산 및 물품관리법」등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5조(사업계획서 등 수립) ① 수탁자는 다음 연도 사업 운영계획서를 전년도 12월 10일까지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②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정산서를, 3개월 이내에 결산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위탁의 해지)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탁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2. 수탁자가 수탁 협약 조건을 위반하는 경우
3. 그 밖에 위탁 운영을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박물관의 위탁 운영을 해지하고자 할 때에는 그 사유 및 해지일자를 해지 예정일 3개월 전까지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며, 이 경우 사전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7조(지도·감독) ① 구청장은 수탁자로부터 박물관의 위탁 운영과 관련된 보고를 받을 수 있으며, 정기적 지도점검 및 필요에 따라 관계 공무원이 시설을 방문하여 관련 서류 일체, 그 밖에 필요한 자료 등을 조사 또는 검사하게 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조사·검사 결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 시정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다.

제8조(원상회복 및 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구청장의 승인 없이 시설 또는 구조를 변경하거나 건물 및 시설물을 훼손하였을 때에는 시설물 등을 원상회복 시키거나 그에 상응하는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3장 시설의 이용

제9조(개관 및 휴관) 박물관 내 부설 주차장을 제외한 시설은 다음 각 호의 휴관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관한다.

1. 1월 1일, 설날·추석 당일
2. 매주 월요일(다만,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날을 휴관일로 한다.)
3. 시설 개·보수, 전시관 전시물 교체 등 구청장이 별도로 정하는 휴관일

제10조(이용 시간) ① 박물관 내 부설주차장을 제외한 시설에 대한 기본 이용 시간은 다음과 같다.

1. 시설 이용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2. 전시관 관람 목적 입장 시간 : 오전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 ② 박물관 내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시간은 별도로 정한다.

제11조(관람료) ① 상설 전시관에 대한 관람료는 무료로 한다.

- ② 다만, 자체적으로 기획을 하는 전시나 대관을 받아 전시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과 관람료를 협의한 후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12조(무료 관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제11조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관람료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1. 7세 이하의 어린이와 65세 이상의 노인
2. 국빈·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
3.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공무원
4.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5.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독립 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6. 「장애인 복지법」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및 그와 동행하는 보호자 1명
7.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8.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카드에 등재된 가족 포함)
9. 그 밖에 구청장이 시설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②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일반 관람객 또는 시설 사용자에게도 무료 관람을 실시하게 할 수 있다.

제13조(시설 이용 금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시설 이용을 금지한다.

1. 술에 취한 사람
2. 위험물이나 악취, 혐오감을 주는 물품을 소지한 사람
3. 그 밖에 전시물 등의 보호 또는 시설 이용 질서 유지를 위해 시설 이용 금지가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14조(행위의 제한) ① 관람자는 박물관 내 허가되지 않은 장소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흡연, 음주 또는 취식하는 행위
2. 박물관장의 허가 없이 조명을 비추거나 촬영하는 행위
3. 허가되지 않은 전시물을 만지는 행위
4. 고성방가 등 다른 이용객에게 지장을 주는 행위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사람에게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제15조(이용객의 변상 책임) 박물관 이용객은 전시물 및 시설물 등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훼손·멸실하였거나 그 밖에 재산상의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구청장에게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4장 시설의 사용

제16조(사용 허가) ① 구청장은 박물관 운영에 지장이 없는 범위 안에서 문화예술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전시, 행사 등에 대해 시설 사용을 허가할 수 있다.

- ② 박물관 내 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를 작성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허가 내용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도 또한 같다.

- ③ 구청장은 시설 사용에 대한 허가 시 별지 제2호 서식으로 시설 이용 신청자에게 교부 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자와 협의된 경우 이를 생략 할 수 있다.

제17조(사용 허가 취소)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하거나 장소 사용을 제한 또는 중지하게 할 수 있다.

1. 시설 사용자가 조례 또는 이 조례에 따른 규칙을 위반하였을 때
2. 사용 허가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용료를 체납하였을 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 허가를 받았을 때

4.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불가항력의 사유로 시설의 사용이 불가능하였을 때

제18조(사용 허가 제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시설 사용을 허가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제17조 제1호부터 제3호까지 규정된 사유로 시설 사용 허가 취소 또는 중지를 2회 이상 받은 자가 시설 사용 신청을 하는 경우
2. 박물관 내 시설 또는 설비를 훼손하거나 망실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3. 그 밖에 박물관의 설치 목적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될 경우

제19조(시설 사용료) ① 시설 사용 허가를 받은 자(이하 "시설 사용자"라 한다)는 사용 예정일 10일 전까지 별표 1의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시설 사용자에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행사일 전일까지 시설 사용료를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이미 납부된 시설 사용료는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시설 사용료를 반환할 수 있다.

1. 박물관의 불가피한 사정으로 그 사용을 취소 또는 중지한 경우
2.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
3. 시설 사용 예정일 3일 전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한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장이 타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한 경우

제20조(사용료 감면)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시설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 구청이 주최·주관하는 행사 : 전액 감면
2. 구청이 후원하는 행사 : 반액 감면
3. 기타 박물관 내부 운영 규정에서 별도 정한 경우

제5장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제21조(설치) 구청장은 박물관의 효율적인 운영 관리를 위하여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이하 "자문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22조(기능) ① 자문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박물관 운영과 발전을 위한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
2. 박물관 제반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
3. 박물관 주요 사업 계획 수립 및 변경에 관한 사항

4. 박물관 운영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및 민관 협력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자문을 요청하는 사항

제2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2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② 위원장은 부구청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구청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다만, 관계 공무원, 구의회 의원, 박물관장은 당연직으로 한다.

1. 관계 공무원

2. 구의회 의원

3. 역사·문화·공연예술·관광·전시·종교·콘텐츠 기획 등의 분야에 전문지식이 있거나 관련 분야 근무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박물관 운영에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24조(임기) 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② 공무원 또는 의원이 위원인 경우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

③ 보궐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다만, 남은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제외한다.

제25조(해촉)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

1. 본인이 원하는 경우

2. 질병, 장기 출타, 직무 태만, 품위 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위원으로 부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26조(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27조(운영) ① 위원회는 구청장의 요청이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이 요구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일시·장소 및 안건 내용 등을 사전에 각 위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당연직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6장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 제28조(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① 구청장은 박물관에서 다양한 분야의 교육·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
- ② 구청장은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충당을 위하여 프로그램 참가자로부터 별표 2의 수강료 금액 범위에서 수강료를 징수할 수 있다.
- 제29조(수강료의 납부 및 반환) ① 박물관에서 운영하는 교육·문화 프로그램에 참가를 원하는 사람은 납부기한까지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 ② 수강 신청한 자가 납부한 수강료는 별표 3의 기준에 따라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 제30조(수강료의 감면) 구청장은 별표 4와 같이 수강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항목이 둘 이상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만 적용하되, 신청자에게 유리한 항목으로 한다.

제7장 부설주차장 운영

- 제31조(주차장 운영) ① 주차장 운영 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11시까지로 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그 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② 주차장은 일일 주차와 월 정기 주차로 구분하여 운영하되, 월 정기 주차를 이용 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주차장 월 정기 신청서를 제출 후 사용승인을 받은 후 이용하여야 한다.
- ③ 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무인 정산기를 이용하여 별도로 요금을 징수할 수 있으며, 주차 이용요금은 별표 5와 같다.
- 제3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내 시설 사용료 (제19조 관련)

연번	시설명	면적	1회 이용시간	금액	비고
1	교육 강당 (지하1층)	210.23m ²	반일	250,000원	
			전일	500,000원	
2	기획 전시실 (지하2층)	310.63m ²	전일	500,000원	
3	소강당 (지하2층)	112.87m ²	반일	170,000원	
			전일	250,000원	

- ※ 1. 사용료는 평일을 기준으로 한 것이며, 사용시간은 전일시간(09:00~18:00),
반일시간(09:00~13:00 / 14:00~18:00 선택)임
2. 1회 이용 기준시간 미만 사용한 경우 1회 이용으로 적용함.
3. 토·일·공휴일 및 야간 시간(19:00~22:00) 대관 시 대관료에 30%를 할증함.
4. 상기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지 않은 금액임.

[별표 2]

수 강 료 (제28조 관련)

구분	수강료	비고
일반 교육·체험 프로그램	1개월 50,000원 이하	프로그램 별 주 1회 내지 월 5회 기준
세미나·포럼 등 전문가 프로그램	강의시간, 강사료, 교재비 등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비용에 근거하여 사전에 구청장과 협의하여 보편적이고 상식적인 금액으로 선정	

[별표 3]

수강료 반환기준 (제29조 관련)

구 분		반환사유 발생일	반환금액
수강 신청자 최소 요청의 경우	강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	강의 시작 전	수강료 전액
		총 강의 시간의 1/3이 지나기 전	수강료의 2/3 해당액
		총 강의 시간의 1/2이 지나기 전	수강료의 1/2 해당액
		총 강의 시간의 1/2이 지난 후	반환하지 않음
	강의 기간이 1개월을 초과하는 경우	강의 시작 전	수강료 전액
		강의 시작 후	반환 사유가 발생한 그 달의 반환 대상 수강료(강의 기간이 1개월 이내인 경우에 준하여 산출된 수강료를 말한다.)와 나머지 달의 수강료 전액을 합산한 금액
모집 정원 미달, 강사 및 강의 장소 등 그 외의 사유로 인한 경우		강의 시작 전	수강료 전액
		강의를 할 수 없거나, 강의 장소를 제공할 수 없게 된 때	사유 발생 이후 수강료 전액 (이미 낸 수강료를 일괄 계산한 금액)
※ 총 강의 시간은 강의 기간 중의 총 강의 시간을 말하며, 반환 금액의 산정은 반환 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경과된 강의 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별표 4]

수강료 감면기준 (제30조 관련)

유형별 구분	할인율	대상 및 내용
수급자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국가유공자	50%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장애인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1~3급 장애인)
경로우대자	20%	「노인복지법」에 따른 65세 이상인 사람
중구민	20%	중구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둔 사람

[별표 5]

주차 이용요금 (제31조 관련)

1. 주차장 이용 요금은 아래와 같다.

- 가. 일일 시간 주차 : 5분당 400원을 기본료로 징수하고,
30분 초과 시 매 10분 당 1,000원으로 징수한다.
- 나. 월 정기주차 요금은 월 250,000원으로 한다.

2. 주차요금 면제 및 감면 대상은 아래와 같다.

가. 면제 대상

- 1) 공무 수행 차량
- 2) 시·구의원, 다른 기관 공무원, 언론기관 로고 부착차량
- 3) 업무 등의 방문으로 수탁체 담당부서 확인증을 소지한자의 차량
- 4) 그 밖에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부설 주차장 운영 내부 규정에 따라 면제 대상으로 별도 지정한 차량

나. 감면 대상

- 1)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이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하여 주차 요금의 100분의 80을 할인한다.
 - 가).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자동차 표지를 부착한 차량 중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등록증을 제시한 경우
 - 나).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보훈처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경우
 -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장(보훈지청장)이 발행한 국가유공자증을 소지한 자
- 2) 「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 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에 대하여는 100분의50을 할인한다.
- 3) 「5·18 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제2호에 따른 5·18 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하고 본인 소유의 비사업용 자동차를 직접 운전하거나 장애 정도가 심하여 타인으로 하여금 대리운전을 하게 하는 경우에는 1시간 범위 내에서 주차요금을 면제하고, 1시간 초과 시 100분의50을 할인한다.
- 4) 다동이 행복카드 소지자에 대하여 두 자녀는 주차요금의 100분의30, 세 자녀 이상은 100분의50을 할인한다.
- 5)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부설 주차장 운영 내부 규정에 감면 대상으로 별도 지정한 차량

3. 주차 요금의 할인 등에 따라 100원 미만의 단수가 발생할 경우 그 단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4. 위 “나. 감면 대상” 중 둘 이상의 주차요금 감면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감면율이 높은 하나만 적용한다.

[별지 제1호 서식]

시설사용(변경)허가 신청서				
신 청 인	단체(신청자) 주소			
	단 체 명 또는 신청자		전 화 (핸드폰)	
	대표자 성명		생년월일	
이용시설				
사용기간	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일간 / 시간)			
사용목적 (변경사유)	※ 전시회 또는 행사의 경우 전시(행사명) 기재			
사 용 료				
첨 부	1. 행사계획서 또는 전시기본계획서 각 1부. 2. 서약서 1부. 3. 기타 입증서류 1부.			
관람료 (전시회의 경우)	무 료			
	유 료	※ 관람료는 전시기본계획서에 첨부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사용 허가(변경)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장 귀하				

[별지 제2호 서식]

시설 사용(대관) 허가			
단 체 명 또는 신청자		대표자성명	
단체의 소재지 또는 신청자 주소		연 락 처	(사) (자)
행사의 명칭			
허 가 사 항	구 분	허 가 내 용	
	사용일시		
	시 설 명		
	기 타		
허가조건 등 기 타 사 항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6조 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시설 사용(대관)을 허가합니다. 20 년 월 일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장			

[별지 제3호 서식]

시설 사용 취소 및 사용료 반환 신청서				
신 청 인	단체명(성명)			
	주 소			
	대 표 자 명		전 화 번 호	
	담 당 자 명		이 동 전 화	
신 청 내 용	사용허가시설		사용목적	
	사용(이용)기간	년 월 일 (시 분) ~		
납부한사용료	금	원정 (₩)		
반환신청액	금	원정 (₩)		
입 금 계 좌	은 행 명		예금주명	
	계좌번호			
취소신청사유 (구체적으로 기재)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19조 제2항에 따라 시설 사용허가 신청 취소 및 납부된 사용료의 반환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 청 인 단체명 : 성 명 : (인)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장 귀하				
첨 부	1. 신분증 사본 1부. 2. 예금통장사본 1부.			

[별지 제4호 서식]

주차장 월 정기 신청서			
신청인 성명		전화번호	
차량번호		차량소유주	
할인사항	경차 · 유공자 · 장애인 · 저공해 · 다둥이(2 자녀), 다둥이(3 자녀 이상) · 기타	※구비서류 자동차등록증, 할인관련 서류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에 관한 동의서] 1. 「개인정보 보호법」 제 15 조(개인정보의 수집·이용), 제 22 조(동의를 받는 방법) 제 24 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에 의거, 부설주차장 월 정기 주차 관련 업무를 위한 목적으로 사용되며, 시설이 수집·이용하는 본인의 성명, 연락처 및 추가 할인사항을 위해 기타 할인에 관련한 서류 (장애인등록증, 국가유공자증) 등의 일반 정보 및 개인정보가 주차장 신청 및 사용기간 동안 활용 될 수 있음을 동의합니다. ▶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 ☐ 동의안함 ☐ ※ 할인과정에서 수집되게 되는 장애인등록증 등의 고유 식별 정보는 알아볼 수 없도록 마스킹 처리하여 보관합니다. 2. 신청인은 개인정보의 수집 및 활용에 동의하지 않을 수 있으며, 상기내용의 미동의 시 주차장 이용에 제약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정보 파기 동의 ☐ 동의안함 ☐ 3. 수집된 개인정보는 「개인정보 보호법」 제 21 조(개인정보의 파기)에 의하여 보유목적 달성 후 안전한 방법으로 파기합니다. ▶ 개인정보 파기 동의 ☐ 동의안함 ☐			
「서울특별시 중구 서소문 성지 역사 박물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 31 조 제 2 항에 따라 위 서약사항에 동의하며 월 정기 주차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및 서약인 (서명 또는 인) 서소문성지역사박물관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서소문 역사 박물관의 안정적인 운영·관리와 관련한 규정이 필요함.
- 서소문 역사공원이 가지는 정체성과 특수한 역사 가치를 살려 중구의 대표적인 관광 명소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제1장 총칙
 - 조례의 제정 목적, 정의, 설치 및 기능 (제1조~제3조)
- 제2장 시설의 운영 및 관리
 - 시설 운영, 사업계획서 등 수립, 위탁 해지, 지도·감독 등 (제4조~제8조)
- 제3장 시설의 이용
 - 개관 및 휴관, 이용시간, 관람료, 무료관람 (제9조~제12조)
 - 시설 이용금지, 행위 제한, 이용객 변상 책임 (제13조~제15조)
- 제4장 시설의 사용
 - 사용 허가·취소·허가 제한, 시설 사용료, 감면 (제16조~제20조)
- 제5장 박물관 운영자문위원회
 - 위원회 설치, 기능, 구성, 임기, 해촉, 직무, 운영 (제21조~제27조)
- 제6장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등
 - 교육·문화 프로그램 운영, 수강료 납부 및 반환, 감면 (제28조~제30조)
- 제7장 부설주차장 운영
 - 주차장 운영, 시행규칙 (제31조~제32조)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19년 8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서울특별시 중구 조례 제1467호

서울특별시 중구 1인 가구 고독사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소외·단절된 1인 가구의 사회적 고립 및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1인 가구”란 1명이 단독으로 취사·취침 등을 하며 생계를 영위하는 생활 단위를 말한다.
2. “고독사”란 가족, 친척 등 주변 사람들과 단절된 채 홀로 사는 사람이 자살, 병사 등의 이유로 혼자 임종을 맞고, 시신이 일정한 시간이 흐른 뒤에 발견되는 죽음을 말한다.
3. “고독사 위험자”란 경제적·신체적·정서적·사회적 문제로 고독사가 우려되는 사람을 말한다.
4. “사회적 고립가구”란 가족, 이웃, 친구관계가 단절되었거나 단절되어가는 1인 가구를 말한다.
5. “무연고 사망자”란 고독사 사망자 중 유가족이 없거나 유가족이 시신 인수를 거부해 자치구가 시신을 처리하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책무) ① 서울특별시 중구청장(이하“구청장”이라 한다)은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등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람을 위험으로부터 적극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정책수립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고독사 위험자 전수조사를 통한 등록·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
2. 고독사 위험자 개인별 맞춤형서비스 지원에 관한 사항
3. 고독사 위험자 정신보건 및 건강상태 관리에 관한 사항
4.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교육에 관한 사항
5. 안전도우미 임무 및 처우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고독사 위험자에 대한 고독사 예방대책과 관련하여 구청장이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고독사 발생 및 사회적 고립 위기에 대한 사전 예방 및 사후 대응의 각 단계에 따른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중구에 주소를 둔 1인 가구(거소지가 중구로 되어 있는 자를 포함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사회적 고립가구의 고독사 예방 등을 위하여 1인 가구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으며, 실태조사 결과를 관련 정책의 수립·시행에 활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방법 및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따로 정한다.

제6조(지원대상) 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을 지원대상자로 한다.

1. 1인 가구 중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정신 및 신체 건강의 이상으로 인하여 고독사 위험에 노출된 사람
2. 재가복지서비스를 받지 않는 1인 가구 중 건강상태, 경제상태, 사회적 관계 접촉빈도 등이 취약한 사람
3. 동 주민센터, 사회복지기관 등을 통해 발굴된 고독사 및 사회적 고립 위험자
4. 그 밖에 지원이 필요하다고 구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제7조(예방 및 지원 사업) ① 구청장은 제6조의 지원대상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2. 정기적인 안부확인, 긴급의료 지원
 3. 방문간호서비스 및 응급 구급용품 지원
 4.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5.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커뮤니티) 지원사업
 6. 문화여가일자리 지원사업
 7. 정부지원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복지자원 발굴연계 서비스
 8. 정보통신기술, 사용자 행동인식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9.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10.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구청장은 제1항의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지원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다.
- ③ 구청장은 제1항의 사업에 드는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8조(협력체계 구축) 구청장은 고독사 예방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관련기관 및 단체 등과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조례의 폐지) 「서울특별시 중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 제개정이유

- 소외·단절된 1인 가구에 대한 고독사 예방과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정책 추진 등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회적 고립가구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 계획의 수립·시행, 적용범위 등(제1조~제5조)
- 실태조사(제6조)
- 지원대상, 예방 및 지원사업(제7조~제8조)
 - 심리상담 및 심리치료
 - 정기적인 안부확인, 긴급의료 지원
 - 방문간호서비스 및 응급 구급용품 지원
 - 개인별 맞춤형 복지서비스
 - 사회적 관계형성을 위한 주민모임(커뮤니티) 지원 사업
 - 문화 · 여가 · 일자리 지원 사업
 - 정부지원 사업 및 지역사회 민간자원 발굴 · 연계 서비스
 - 정보통신기술, 사용자 행동인식기술 등을 활용한 안부확인서비스
 - 무연고 사망자에 대한 공영장례 서비스 지원
 - 그 밖에 1인 가구의 복지 향상과 안정적 생활기반 구축을 위하여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협력체계 구축(제9조)
- 다른 조례(「서울특별시 중구 홀몸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의 폐지(부칙)

공 고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595호

2019. 6. 1. 기준개별주택가격(안) 열람 및 의견제출 공고

2019. 1. 1.~ 5. 31.기간 중 토지분할·합병 및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대하여 2019. 6. 1.기준으로 조사한 개별주택가격(안)을 열람하고 있으니 기간 내 열람하시고 의견이 있으신 분은「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 8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열 랐

- 기 간 : 2019년 8월 9일 ~ 8월 28일
- 장 소 : 구청 세무1과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말소대상 건물등기 내역
- 열람내용 : 2019.6.1기준으로 산정된 개별주택가격(안)

□ 의견제출

- 기 간 : 2019년 8월 9일 ~ 8월 28일
- 제출사항 : 용도지역 및 주택물 구조 등 주택특성이 다르거나 관련 표준주택의 가격 및 인근주택 가격이 과도하게 높거나 낮아 가격균형을 이루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 열람가격에 대한 의견을 제시
- 제 출 자 : 주택소유자 및 법률상 이해관계인
※ 2019.1.1.~5.31.사이에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 신축 등의 사유가 발생한 개별주택에 한함
- 제출방법 : 세무1과 및 동주민센터 민원실에 비치되어 있는 개별주택가격 의견제출서 서식에 기재 후 민원실 및 구청 세무1과로 제출

□ 의견제출에 대한 처리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은 주택의 특성, 적정가격, 인근주택과의 가격균형 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공정하게 심사하여 그 처리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회신

문의처 : 세무1과 과표팀☎ : (02)3396 - 5152 ~ 4]

● 서울특별시 중구 공고 제2019-605호

건축물부존재증명서 직권처리 공시송달 공고

실제 존재하지 아니한 일본인 명의 건물등기 말소 대상에 대하여『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제 25조 규정 관련 토지소유자에게 7차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 신청 안내하였으나,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할 수 없어 미신청분을 건축물부존재증명서 직권처리하고자 『행정절차법』제14조 제4항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공시송달 공고합니다.

2019년 8월 9일
서울특별시 중구청장

- 아 래 -

1. 공고(의견제출)기간 : 2019. 8. 9. ~ 2019. 8. 24. (15일간)
2. 공고장소 : 서울 중구청 게시판 및 홈페이지, 전국 시·군·구 게시판 및 홈페이지
3. 공시송달 내용

가. 처분의 제목		건축물부존재증명서 직권 처리
나. 당사자	성명(명칭)	**기업주식회사 외 31건
	주 소 (대장상주소)	미기재
다. 처분의 원인된 사실		건축물부존재증명발급 신청
라. 처분하고자 하는 내용		건축물부존재증명서 직권 처리 “ 불임 일제잔재청산 관련 건물등기 말소 대상내역 ”
마. 법적근거 및 조문		건축물대장의 기재 및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25조

4. 유의 사항

- 가. 의견제출 기한 내에 의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하여 처리할 예정이오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 중구청 토지관리과(☎02-3396-5903)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일제청산 관련 건물등기 말소 대상내역

2. 의견제출서 1부.

[붙임1]

일제잔재청산 관련 건물등기 말소 대상내역

연 번	말소대상 건물등기 내역							이동 후 지번	토지 소유 자	비고
	동명	본번	부 번	관계 지번	등기내용	건물소유자	고유 번호			
1	남창동	30		31-1	목조와즙2계건본가1동 건평22평6홑5작3재 외2계평18평2홑 내와즙20평8홑 도단즙1평8홑5작3재	유본무웅	301247	남창동 30	**기업 주식 회사	
2	남창동	167	3		목조와즙평가건본가1동 건평23평	지화유병위	305065	남창동 167-3	**기업 주식 회사	
3	남창동	168	4		목조와즙평가건본가1동 건평20평2홑1작	선파윤일랑	305078	남창동 168-4	장*현	
4	남창동	168	8		목조와즙평가건본가1동 건평57평4홑	선파윤일랑	305085	남창동 168-8	서*조	
5	남창동	210	2		목조와즙평가건본가1동 건평20평	선파윤일랑	305415	남창동 210-2	홍*수	
6	신당동	107	3		목조초즙평가건본가 건평5평6홑4작 부속 목조와즙평가건납옥 건평3평6홑	평강수성	270668	신당동 120-22	진*운	
7	신당동	107	3		목조와즙평가건본가 건평5평	금희희원	270683	신당동 120-22	진*운	
8	신당동	107	3		목조초즙평가건본가 건평5평7홑 부속 목조초즙평가건물치 건평1평8홑2작2재	김택덕광	270689	신당동 120-22	진*운	
9	신당동	107	3		복조와급도단즙평가건본가 건평14평 내역와즙8평8홑9작 도단즙6평	고산정부	270691	신당동 120-22	진*운	

10	신당동	107	3		목조초즙평가건본가 건평6평6홑3작	산본쾌영	270692	신당동 120-22	진*운	
11	신당동	107	3		목조초즙평가건본가 건평4평6홑2작5재	암본상정	270699	신당동 120-22	진*운	
12	오장동	44	6		목조와즙2계건본가1동 건평 16평5홑 외2계평9평2홑5작	육보실광	313988	오장동 44-6	이*만	
13	오장동	44	6		목조초즙평가건본가1동 건평7평2홑	구보실광	313989	오장동 44-6	이*만	
14	오장동	44	6		목조초즙평가건본가1동 건평5평8홑3작	구보실광	313990	오장동 44-6	이*만	
15	을지로3가	95	6		목조도단즙평가건본가1동 건평10평5홑6작	산내적량	777019	을지로3가 95-6	유*자	
16	을지로3가	95	6		목조와즙평가건본가1동 건평15평7홑3작	산내적량	777020	을지로3가 95-6	유*자	
17	을지로3가	95	6		목조와즙평가건본가1동 건평14평9홑4작	산내적량	777021	을지로3가 95-6	유*자	
18	을지로4가	140			목조와즙평가건본가1동 건평20평	원인안치	777674	을지로4가 140-1	채*석	
19	인현동1가	38			목조와즙도단즙2계건 병원1동 건평11평 와즙7평7홑5작 외2계평7평	강원정차량	750577	인현동1가 38-1	한*수	
20	인현동1가	114			목조와즙평가건본가1동 건평9평6홑3작5재	단야국송	750826	인현동1가 114-1	문*민	
21	초동	19	10		부록초조와즙평가건 본가1동 건평8평	영본풍치량	557110	초동 19-10	송*근	

22	초동	19	10		목조와즙2계건본가1동 건평17평 외2계평14평	영본풍치랑	557111	초동 19-10	송*근	
23	충무로2가	51	3		목조와즙2계건본가1동 건평17평7홉5작 외2계평14평	북촌용지조	552548	충무로2가 51-3	문*주	
24	충무로2가	53	8		목조와즙2계건본가1동 건평24평4홉9작 외2계평18평9홉	중전공개	552612	충무로2가 53-8	조*광	
25	충무로2가	53	8		목조와급도단즙2계건본가1동 건평18평6홉5작5재 내도단즙3평3홉5작5재 외2계평17평1홉6작	야구임치랑	552613	충무로2가 53-8	조*광	
26	충무로2가	53	8		목조와즙2계건본가1동 건평 15평4홉5작 외2계평13평5홉	야구임치랑	552614	충무로2가 53-8	조*광	
27	충무로2가	53	8		목조와즙평가건본가1동 건평15평2홉	전천용장	552615	충무로2가 53-8	조*광	
28	남창동	46	12		목조와즙평가건본가1동 건평6평4홉7작	원등죽의	303236	남창동 46-12	김*수	
29	봉래동1가	101			목조와즙평가건본가1동 건평9평8홉4작5재	암전남태랑	294495	봉래동1가 101	**산업 주식 회사	
30	북창동	11	7		목조와즙평가건본가1동 건평9평8홉	용천록남	793430	북창동 11-7	김*태	
31	북창동	20	6		목조와즙2계건본가1동 건평22평4홉2작 외2계평21평3홉2작	송본구서	793504	북창동 20-6	**상사 주식 회사	
32	을지로5가	84			목조와즙2계건본가1동 건평12평7홉 외2계평6평	복전우신	781081	을지로5가 84-1	**신탁 주식 회사	

[붙임2]

■ 행정절차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14.7.28>

의견제출서

※ 아래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의견제출인	성명	
	주소	전화번호

의견제출 내용	① 예정된 처분의 제목	
	당사자	성명(명칭)
		주소 (전화번호:)
	의견	
	기타	

「행정절차법」 제27조제1항(제31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의견을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의견제출인

(서명 또는 인)

귀하

유의사항

1. 기재란이 부족한 경우에는 별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증거자료 등을 첨부하실 수 있습니다.
3. 위 의견제출과 관련하여 문서를 받으신 경우에는 문서번호와 일자를 ①란에 함께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10mm×297mm[백상지 80g/㎡(재활용품)]